

1. 개정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안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하여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

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안 제126조, 별표 5 및 별표 16)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포함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의 주기를 규정함.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안 제203조)

종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안 제211조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5. ~ 11. 6., 2023. 12. 27. ~ 2024. 2. 7., 2024. 5. 14. ~ 6.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3. 건설공사에 설치·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

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 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8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제1항제3호”를 “법 제6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9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항

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를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5조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 등”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3호 중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을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한다.

제20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제20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6개월”을 각각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209조제4항 본문 중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으로 한다.

제2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29조제3항 중 “변경신청서를”을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239조제2항 중 “영 제112조제6항”을 “영 제112조제4항”으로, “연장”을 “연기”로 한다.

별표 2의 사업의 종류란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4의2.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별표 5 제5호에 과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파. <u>혼합기</u></p>	<p><u>성능검사</u> <u>교육</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관계 법령</u> ○ <u>혼합기 개론</u> ○ <u>혼합기 구조 및 특성</u> ○ <u>검사기준</u> ○ <u>방호장치</u> ○ <u>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u> ○ <u>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u>
<p>하. <u>파쇄기 또는 분쇄기</u></p>	<p><u>성능검사</u> <u>교육</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관계 법령</u> ○ <u>파쇄기 또는 분쇄기 개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파쇄기 또는 분쇄기 구조 및 특성</u> ○ <u>검사기준</u> ○ <u>방호장치</u> ○ <u>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u> ○ <u>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u>
--	--	---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4 제1호가목4) 번호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630-08-0)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	--------------------------------------	--	--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지정신청서”를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을 “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지정서”를 “지정서(법인 등)”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제4항 및 제2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제1항제3호, 별표 5 제5호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26일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지

3.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1.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④ 합격번호	
⑤ 검사유효기간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O O O O O O (직인) 검 사 원: O O O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인 생략	

2. 표시방법

-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 나.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	□□	□□	-	□	-	□□□□
㉠		㉡	㉢		㉣		㉤
합격연도		검사기관	지역(시·도)		안전검사대상품		일련번호

-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 지역(시·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서울특별시	02	광주광역시	62	강원도	33	경상남도	55
부산광역시	51	대전광역시	42	충청북도	43	전라북도	63
대구광역시	53	울산광역시	52	충청남도	41	전라남도	61
인천광역시	32	세종시	44	경상북도	54	제주도	64
		경기도	31				

㉞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번호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A
2	전단기	B
3	크레인	C
4	리프트	D
5	압력용기	E
6	곤돌라	F
7	국소배기장치	G
8	원심기	H
9	롤러기	I
10	사출성형기	J
11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K
12	컨베이어	L
13	산업용 로봇	M
14	혼합기	N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O

㉟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 라.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월·일과 효력만료 연·월·일을 기입한다.
-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바.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신청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업무지역		
	사무소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지정신청하는 지도사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만 기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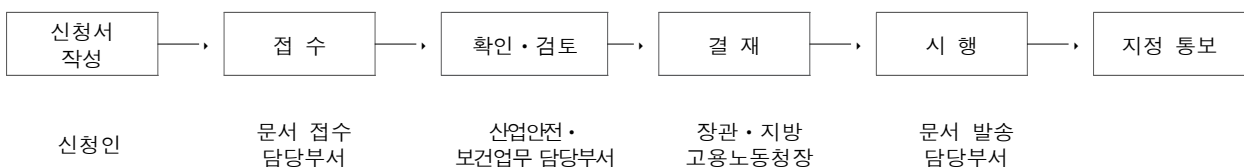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3.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제 호

() 지정서(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성명		
사무소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사항	총 업무(지정) 한계	사업장 ()개소, 근로자 ()명
	관할지역 업무(지정) 한계	사업장 ()개소, 근로자 ()명
	업무(지정) 지역	

※ 준수사항

1.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신청용)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업무지역		
	사무소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변경신청하는 지도사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만 기입합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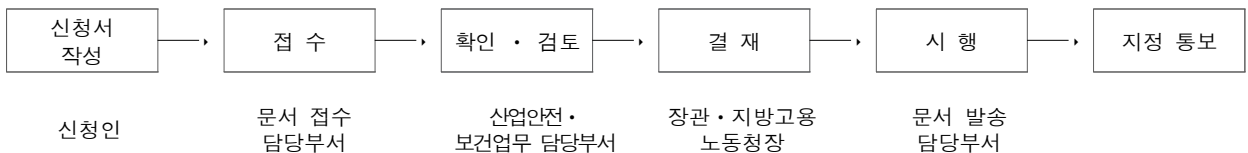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승인신청서

※ 공지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제조등 금지물질	금지물질 명칭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품명					
	제조·수입·사용의 목적					
	제조·사용	제조기간	년	월 ~	년	월
	기간	사용기간	년	월 ~	년	월
	또는 수입일	수입일	년	월		
제품의 양(g)						
금지물질 함유량(%)						
종사 근로자 수	제조(명)		사용(명)			
제조설비등	건물 개요	바닥면적				
		구조(바닥 포함)				
	제조설비 개요					
사용설비 개요						
보관	대상 물질을 넣는 용기					
	대상 물질 보관 장소					
보호구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종류	재질	개수		
	불침투성 보호장갑	종류	재질	개수		
	그 밖의 보호구		종류	재질	개수	
시험연구 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2조제1항에 따라 []제조 []수입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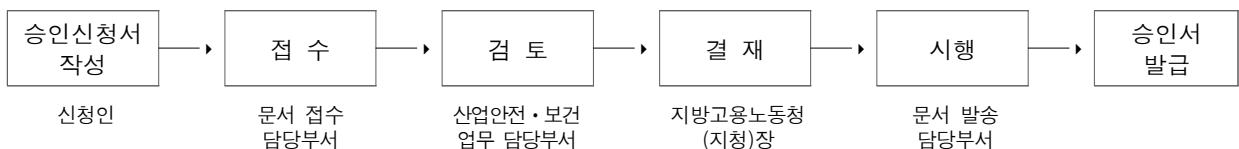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서식 제목 중 제조·사용·수입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제품의 양란에는 제조·사용 기간의 총량을 적습니다.
3. 건물 개요란에는 제조등급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을 적습니다.
4. 구조(바닥 포함)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등의 구분과 바닥의 재질을 적습니다.
5. 제조설비 개요란에는 주요 제조설비를 적고, 주요 제조설비 등의 밀폐 상태 및 배관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드래프트 체임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6. 제조등급지물질을 넣는 용기란에는 용기의 재질과 용량을 적습니다.
7. 불침투성 보호앞치마란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란에는 해당 보호구의 재질과 개수를 적습니다.
8. 그 밖의 보호구란에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의 종류와 개수를 적습니다.
9. 참고사항란에는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실시기관명을 적되, 제조등급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영역		
	시험합격	제	회
사무소 (예정)	명칭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내용 및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등록 []갱신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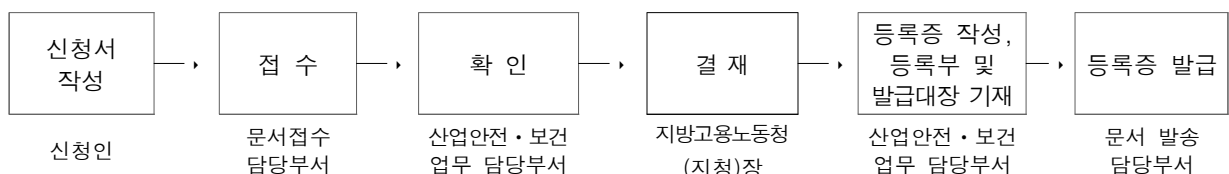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갱신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변경 신청 하는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원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생략)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

-----.

-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2. (생략)

3.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신설>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에 설치·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②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생략)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생략)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삭제>

<삭제>

5. (현행과 같음)

<삭제>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현행과 같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4. (생략)

④ (생략)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⑤ (생략)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 등) ① -----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

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 1. ~ 8. (생략)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 ④ (생략)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7. (생략)

-----.

- 1. ~ 8. (현행과 같음)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 -----

-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

-----.

- 1. ~ 7. (현행과 같음)

<p>8. 「<u>전기사업법</u>」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p> <p>9. 「<u>항만법</u>」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p> <p>10.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제25조제1항에 따른 <u>자체점검</u> 등을 받은 경우</p> <p>11. (생략)</p> <p>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 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u>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u>: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p> <p>② (생략)</p> <p>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p>	<p>8. 「<u>전기안전관리법</u>」 제11조</p> <p>-----</p> <p>9. 「<u>항만법</u>」 제33조제1항제3호</p> <p>-----</p> <p>10. 「<u>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2조제1항에 따른 <u>자체점검</u></p> <p>-----</p> <p>11. (현행과 같음)</p> <p>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 표시 및 표시방법) ①</p> <p>-----</p> <p>-----</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p> <p>-----</p> <p>----- <u>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u></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p>
--	--

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 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 다. (생략)

정)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현행과 같음)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

1. -----

-----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 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2. -----

-----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생략)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 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생략)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⑦ (생략)

제229조(등록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⑤ (생략)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생략)

② 영 제112조제6항에 따른 과

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⑦ (현행과 같음)

제229조(등록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2조제4항-----

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
식에 따른다.

----- 연기 -----

-----.